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20가합5283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다담

담당변호사 김익현, 곽향기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석호철, 안선영

변론 종결 2020. 10. 13.

판결 선고 2020. 10. 2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2,039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9. 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18. 3. 26.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와 사이에, 계약기간은 2018. 3. 26.부터 2019. 4. 1.까지, 계약금액은 2,3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C이 D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고, D에게 보호예수 후 제3자 배정주식 출고 후 수익의 1%를 투자일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D는 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가 발행한 주식 2,346,928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를 C의 계산으로 취득한 다음, 주식회사 F(이하 'F'이라 한다)의 D 명의로 개설된 계좌(계좌번호는 G, H, I, J이고, 이하 '이 사건 각 계좌'라 한다)에 입고하였다.

다. C은 2018. 9. 7. 피고로부터 50억 원을 변제기 2019. 3. 6., 이자 연 15%, 지연손해금 연 24%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75억 원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, 같은 날 피고는 F으로부터 D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계좌질권 설정승낙을 받아, 아래와 같이 질권을 설정받았다(이하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'이 사건 질권'이라 한다).

순번	계좌	질권설정금액	계좌질권 신청사항
1	G	2,300,000,000원	매매허용
2	H	1,700,000,000원	매매허용
3	I	1,800,000,000원	매매허용
4	J	1,700,000,000원	매매허용
합계	7,500,000,000원		

라. D는 2019. 5. 28. K 주식회사(이하 'K'라 한다)와 사이에, D가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,500원 [총 매매대금 3,520,392,000원(=2,346,928주 × 1,500원)]에 매도하되, 계약금 352,039,200원(=3,520,392,000원 × 10%)은 계약 당일에,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

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주식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조(특약사항) 제4항은 "본건 거래대상주식의 질권자 피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체결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향후 민,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."라고 정하고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상주식 질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·날인하였다.

마. K는 2019. 5. 28.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금 352,039,200원(이하 '이 사건 계약금'이라 한다)을 이 사건 계좌 중 G 계좌(이하 '이 사건 1 계좌'라 한다)에 입금하였으나,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. 이와 같은 K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, K가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이 사건 1 계좌에 남게 되었다.

바. 피고는 D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에 남아 있던 이 사건 계약금 352,039,200원을 포함한 352,287,866원을 대체출금의 방식으로 지급받았다.

사. 원고는 2020. 3. 12.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 352,039,200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, 원고는 2020. 3. 27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 352,039,2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7 내지 11, 14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항변의 요지

D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D가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.

나. 관련 법리

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.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,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

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참조).

다. 판단

1)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채권양도의 당사자인 D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'L'으로 동일한 사실, 이 사건 채권양도 후 15일만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

2)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, ① 원고는 D에 대하여 2019. 6. 20. 대여금 5,074,225,19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이 D에 송달된 후 D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는데, 이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와 같이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, ② D와 원고는 본점 주소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, 양자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D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도 D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K로부터 물취된 이 사건 계약금은 D에게 귀속되고, 이 사건 계약금에는 이 사건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1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계약금 352,039,2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,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. 따라서 피고는 D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, D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, 원고가 D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

의무가 있다.

나. 이 사건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 사건 질권의 성격

1) 피고가 2018. 9. 7. F으로부터 D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계좌질권 설정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갑 제1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질권의 질권설정내역서의 종목명이 '계좌의 유가증권 및 현금성 자산 등 계좌전체'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, D와 피고가 작성하여 F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신청서에 이 사건 질권이 '종목질권'이 아니라 '계좌질권'으로 표시되어 있고, 당초 종목질권 신청사항 부분의 '종목'란에 기재되어 있던 'E' 부분은 삭제된 사실, F이 피고에게 교부한 질권설정승낙서에도 이 사건 질권이 '계좌질권(매매허용)'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질권의 대상인 질물은 E 주식, 즉 이 사건 주식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,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계좌 내에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예치될 유가증권 및 현금성 자산, 즉 '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예치될 예탁유가증권, 예탁금, 이에 대한 이자, 배당 등 일체의 현금성 자산과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'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.

2) 따라서 피고가 설정받은 이 사건 질권은 이른바 권리질권의 일종으로서, 피고는 F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질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탁금 등 채권 일체에 대하여 유효한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다.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

이러한 이 사건 질권의 내용과 성격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

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

352,039,2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1) 이 사건 질권의 질물은 이 사건 각 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래 예치될 '예탁유가증권, 예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, 배당 등 일체의 현금성 자산과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'인데,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1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, 이 사건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질권 실행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, 이를 피고가

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2) 질권설정증낙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, '질권해지가 없는 상태에서 질권자(채권자)는 채무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유가증권 매각 종목, 시기, 수량, 가격, 방법, 출금액수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자(채권자)의 신분증 및 질권자(채권자)의 인감이 날인된 질권실행을 위한 [매도주문표], [출금·고 전표]를 작성하여 F에 제시하면 질권설정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질권목적물의 성질이 매각이 곤란하여 당사자가 출고를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질권실행시에 이르러 당사자가 출고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유가증권 실물출고, 대체출고가 가능합니다.'라고 기재되어 있다. 위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위 계약금 상당액을 포함한 352,287,866원을 대체출금 받은 것은 D의 출금 합의 또는 동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해 준 것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.

3) 원고는 D와 K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"매도인과 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체결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향후 민,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."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한 권리는 D에게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위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D와 K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금이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형표

판사박수진

판사배인영